

2022년도 제1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2. 6. 7.(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10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80건(안건번호 제2022-52309~5418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52309호는 저작권법 제103조를 근거로 권리자에 의해 게시중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추가적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52310호는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천게시물과 별도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52311호~52322호는 웹하드,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14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10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에 관한 회의록 10쪽~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2.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13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5230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03조를 근거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게시중단 조치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

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미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부결 의견임.
- C,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52309호는 저작권법 제 103조를 근거로 권리자에 의해 게시중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추가적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2-5231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2-5231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52311호~5232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및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2311호~523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52323호~5418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중점](방송)기묘한 이야기(2016))'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22-49062호 ‘[중점](방송)기묘한 이야기(2016)’는 2016. 7. 15.부터 방영중인 미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520포인트에 판매중임. ([중점](방송)종이의 집(2017)’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2-49856호 ([중점](방송)종이의 집(2017))’은 2017. 5. 2. ~ 2021. 12. 3. 방영한 스페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130포인트에 판매중임. ([중점](방송)스타트렉: 피카드(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2-50734호 ([중점](방송)스타트렉: 피카드(2020))’은 2020. 1. 23. ~ 2022. 5. 5. 방영한 미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00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 3건을 포함한 4,114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2-52323호~5418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52323호~5418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2-52309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52310호, 제2022-52311호~52322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2-52323호~5418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1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6. 14.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